

남산XR스튜디오 대관 이용약관

제정 2024. 3.11.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주)자이언트스텝과 (주)빅인스퀘어(이하 통칭하여 “운영자”라 함)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아 공동으로 운영·관리하는 남산XR스튜디오(이하 “스튜디오”라 함)의 시설 및 장비를 이용자가 대관 이용함에 있어 “운영자”와 이용자 사이에 필요한 권리·의무 및 제반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이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따라 스튜디오의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스튜디오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2. “이용계약”이라 함은 이용자가 “운영자”가 제공한 이용약관을 확인한 이후 스튜디오 이용 신청서(이하 “이용신청서”라 함)를 작성하여 “운영자”에게 이용을 신청한 후 “운영자”와 스튜디오 이용 계약서(이하 “이용 계약서”라 함)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3. “이용자 정보”라 함은 성명(법인명), 이용자의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등 “운영자”가 제공한 신청양식에 포함되어 있는 이용자의 정보를 말한다.

제3조(위치 및 운영시간)

- ① “스튜디오”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가길 82이다.
“스튜디오”의 정규 운영시간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한 10시부터 19시까지이며, 기타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운영자”는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하여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스튜디오” 이용시간은 정규 운영시간과 같으며(이하 “정규 이용시간”이라 함), 정규 운영시간 외 초과 이용시간에 대한 규정은 제4조 제2항에 따른다.

제4조(이용시간에 따른 이용료 부과 기준)

- ① 이용료는 일 단위(9시간 이용)로 부과하며, 이용자의 실제 이용시간이 9시간 미만이라도 1회 이용으로 간주한다.
- ② “정규 이용시간” 외 초과 이용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할증 이용료를 부과하며, 이용시간이 30분을 초과하는 경우, 1시간 이용으로 간주하여 이용료를 책정한다. 단, 이용자는 초과 이용 발생이 예상될 경우 “운영자”에게 사전 고지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휴일 이용시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정규 이용시간 이용료의 30% 할증 / 시간 단위 부과)
 2. 추가 이용시간: 06:00~10:00, 19:00~23:00 (정규 휴일 이용시간 이용료의 10% 할증 / 시간 단위 부과)
 3. 심야 이용시간: 23:00~익일06:00 (정규 휴일 이용시간 이용료의 20% 할증 / 시간 단위 부과)
- ③ 이용시간의 산정은 이용자의 스튜디오 출입부터 철수 완료 및 퇴장까지의 시간을 모두 포함한다.

제5조(이용구분 및 이용범위)

- ① 이용 시설은 Chroma Wall, LED Wall, Chroma Wall + LED Wall 로 구분한다.
- ② “스튜디오”의 이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LED Wall, Chroma Wall

공간 구분	내용
1. Chroma wall	[공간사이즈 : 13.7m(가로) × 8.5m(세로) × 10m(깊이)] · 4면 기본 도색은 크로마 전용 그린 (4면) *대여시 기본 대관료에 바닥 기본 도색(1겹) 포함됨
2. LED Wall	[공간사이즈 -벽면 :14.4m(가로) × 5.73m(높이) / PITCH : 1.56mm -천장 :11.5m(가로) × 5.5m(깊이) / PITCH : 3.91mm -바닥 :11.5m(가로) × 7.5m(깊이) / PITCH : 3.91mm · media server : Analogway Picturall Pro Mark 2 · videowall processor : Analogway Aquilon C+

2. XR시스템: 광학식 카메라 추적 장치(Tracking system), 가상·증강현실 구현장치 (Reality System), 고속 렌더링 장치(Rendering System), 실시간 색보정 장치 (Color DI System)
 3. 장비: 촬영장비, 조명장비, 음향장비, 그립장비, 기타장비
 4. 부대시설: 컨트롤부스, 아트리움, 분장실, 회의실, 휴게실, 주차공간 등
- ③ 제5조 제2항의 XR시스템 이용 여부에 따라 포함되는 항목을 달리하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분		포함 항목
일반 이용 (XR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Chroma Wall	-장소만 제공
	LED Wall	-장소, 미디어 서버, 비디오 프로세서만 제공
XR 이용 (XR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Chroma Wall	-장소 제공 -제6조 제4항 제8호의 장비의 이용 품목은 촬영 내용에 따라 협의 (이용료 별도)
	LED Wall	-장소, 미디어 서버, 비디오 프로세서 제공 -제6조 제4항 제8호의 장비의 이용 품목은 촬영 내용에 따라 협의 (이용료 별도)

- ④ 이용자가 제5조 제3항에 따라 XR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XR 촬영 준비를 위한 기술 리허설을 진행해야 하며, 기술 리허설을 위한 기간은 “운영자”와 이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때 기술 리허설 이용료는 제4조에 따른 정규 및 휴일 이용시간 이용료의 50%로 한다.

제6조(이용료)

- ① “스튜디오”의 정규 이용시간(평일 10:00~19:00)에 따른 이용료는 제6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다. 정규 이용시간 외 초과 이용은 제4조 제2항에 따라 할증 이용료를 부과한다.
②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의 구성 및 이용료는 아래와 같다.

(단위: 원, VAT 별도)

구분	기본 이용료(9h) Ⓐ	추가 이용료(1h) Ⓐ×10%	심야 이용료(1h) Ⓐ×20%	비고
1.Chroma wall	1,500,000	150,000	300,000	*휴일 이용: 30% 할증 *리허설 이용: 50% 할인
2.LED Wall	4,000,000	400,000	800,000	
3.Chroma + LED wall	5,000,000	500,000	1,000,000	

2. 이용자는 이용 종료 후 “운영자”와 사용한 시설의 오염 상태 확인 및 원상 복구 범위를 협의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과실로 사용 시설의 손상이 있을 경우 아래 기준표에 따라 이용자는 “운영자”에게 수리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Chroma wall	· 이용 종료 후 오염 상태, 범위에 따라 차등 청구함 (단위: 원, VAT 별도)			
	바닥 도색(1겹)	바닥 도색(2겹)	전체 도색(2겹)	그린 외
	기본 대관료에 포함	2,500,000	5,000,000	별도 문의
LED Wall	· 모듈 손상 정도와 유형에 따라 수리 비용이 실비 청구됨. · 부품 수급, 수리 서비스 기간 등으로 이용을 진행할 수 없을 시 손실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③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XR시스템의 이용시간은 이용 시작 시간부터 이용 완료 및 퇴장까지의 시간을 말하며, 제6조 제2항의 시설 이용시간과 달리 할 수 없다.
2. XR시스템의 구성 및 이용료는 아래와 같으며, 구분별 항목을 개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없다.

(단위: 원, VAT 별도)

구분	기본 이용료(9h) ①	추가 이용료(1h) ①×10%	심야 이용료(1h) ①×20%	비고
1. 광학식 카메라 추적 장치 (Tracking system)	250,000	25,000	50,000	*휴일 이용: 30% 할증 *리허설 이용: 50% 할인
2. 가상·증강현실 구현 장치 (Reality System)	800,000	80,000	160,000	
3. 고속 렌더링 장치 (Rendering System)	2,800,000	280,000	560,000	
4. 실시간 색보정 장치 (Color DI System)	300,000	30,000	60,000	
XR시스템 이용료 합계	4,150,000	415,000	830,000	

④ 장비 이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장비의 이용시간은 본 약관 제6조 제2항의 이용시간과 동일하게 산정된다.
- “스튜디오”의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장비 이용만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신청은 불가하다.
- 장비의 이용은 “스튜디오” 내부에서만 가능하며, 외부로의 반출은 불가하다.
- 이용자는 장비 및 물품 파손 발생시 “운영자”에게 해당 손실범위의 100%를 배상하여야 하며, “운영자”는 이용자의 장비 이용 미숙 및 장비 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 이용자의 장비 및 물품에 대한 부주의 또는 조작 미숙으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 및 손망실에 대하여 “운영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이용자의 과실로 “운영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책임으로 “운영자”를 면책시켜야 한다.
- “운영자”가 제공한 장비 이외의 장비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이용자는 “운영자”에게 물품반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운영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 “운영자”는 장비에 사용되는 건전지 등의 소모품은 제공하지 아니한다.
- 장비의 구성 및 이용료는 아래와 같으며, 정규 이용시간 외 초과 이용은 제4조에 따라 할증 이용료를 부과한다.

(단위: 원, VAT 별도)

		보유 장비		수량	단위	기본 이용료 (9h)
장비 구분	제조사	품명				
촬영장비	카메라	ARRI	ALEXA MINI LF (Body, Hi-5, Cine7, LUM 242G, Ronford Tripod set, Oconnor Head, SWING, Easyrig5 등)	1	set	1,000,000
	렌즈	ARRI	Arri Signature Prime Lens (15, 25, 35, 47, 75, 125)	1	set	600,000
			Arri Signature Prime Lens (150)	1	ea	100,000
		Angenieux	Optimo Ultra 12X Zoom Lens (36-435)	1	ea	400,000
		Angenieux	Optimo Ultra Compact Zoom Lens (21-56)	1	ea	300,000
조명장비	조명콘솔	AVOLITES	D-9 215	1	ea	200,000
		AVOLITES	TIGER TOUCH II	1	ea	100,000
	조명기	ARRI	skypanel S60-C (4ea)	1	set	300,000
		ARRI	Orbiter (4ea)	1	set	400,000
		GOODTECK	LED Ruby 9 (20ea)	1	set	1,000,000
		CLAYPAKY	SINFONYA PROFILE 600 (20ea)	1	set	1,500,000
		CAMEO	F2T (8ea)	1	set	160,000
		CAMEO	F2D (5ea)	1	set	100,000
		CHROMA-Q	X5 PLUS (4ea)	1	set	100,000
		CHROMA-Q	SPACE FORCE one by two (16ea)	1	set	400,000
		CHROMA-Q	STUDIO FORCE II 12 (10ea)	1	set	200,000
그립장비	지미짚	TRIANGLE PRO	Jimmy jib	1	set	400,000
	달리	Panther	Twister Dolly	1	set	300,000
		GFm	GF-JIB GF-TRACKS			
음향장비	P.A system	BOSE 등	-AudioMixer m32live -PLAYER & RECORDER DN300R MK II -MULTI EFFECT SPX2000 -SPEAKER F1 812 & SUBWOOFER 4set -W/L MIC SYSTEM 2set -MIC SM58 2ea -MIC SM57 2ea -Equalizer DBX1231 2ea	1	set	250,000
	Audio Recorder	ZOOM 등	-F8n Pro -MDR-7506 -MKH416-P48U3 -Boompole Pro	1	set	30,000
기타장비	프로젝터	Panasonic	PT-MZ14KL (lens: ET-EMT750 / 2ea)	1	set	300,000
	프롬프터	Crystalprom pter	Folder 22N	1	ea	60,000
	인터컴 시스템	LAON	-RA100 2ea -BP850 20ea -LMH-125D 10ea -LNH-20D 10ea -PTE-850 5ea	1	set	150,000

⑤ 부대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부대시설은 기본 대관에 포함되어 별도의 이용료를 책정하지 아니하며, 이용자가 신청한 이용시간과 동일한 시간으로 이용 가능하다.
2. 이용자는 해당 시설 및 시설에 포함된 물품의 손상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즉각 스튜디오에 알려야 하며, 이에 대하여 “운영자”에게 100% 배상하여야 한다. 단,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고 판단되는 경우 배상 범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이에 대해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님을 증명하여야 한다.
3. 기본 대관에 포함되는 부대 시설 및 구성은 아래와 같다.

스튜디오	메인컨트롤 부스	기본 구성 장비
	서브 부스	바텐, 조명 컨트롤러
	냉난방기	스탠드형 냉난방기(6)
부대시설	회의실	70인치 LED TV, 테이블(1), 의자(6)
	분장실	거울, 의자(6), 쇼파(1), 1인쇼파(1), 테이블(1), 탈의실(1)
	휴게실	냉장고(1), 테이블(2), 의자(6), 전자레인지(1)
	임산부 휴게실	냉장고(1), 정수기(1), 전자레인지(1), 기저귀 교환대(1), 세면대 (1)
기타	아트리움	계단 공간
	주차공간	일반차량(11), 장애인차량(1)

⑥ 제5조 3항의 XR이용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시설, 시스템, 장비 이용료에 한하여 20%의 감면율을 적용하며 제8조 제2항과의 중복적용을 허용한다. 시범운영기간 종료 후 이용료의 변동이 있는 경우, “운영자”는 변동에 대한 내용을 시범운영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약관을 개정하여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제7조(기술인력 지원 사항)

- ① 이용자는 장비 운영, XR시스템 운영, 별도의 배경 제작 (레벨 디자인)에 대한 기술 인력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컨설팅에 따라 매칭되어진 전문제작사와 별도로 책정되는 기술료는 스튜디오와 무관하며 이용자가 그 기술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 ② 이용자가 배경 제작 (레벨 디자인)을 함께 있어 “운영자”가 보유하고 있는 배경 콘텐츠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3]배경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자”의 승인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 감면)

- ① “운영자”는 제6조의 시설, XR시스템, 장비 이용료에 한하여 제8조 제2항과 같이 감면을 할 수 있다. 단, 원상복구 비용과 제7조의 기술인력 지원사항은 감면에 포함되지 아니 한다.
- ② 이용료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중복적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1. 서울을 소재지로 하며 「예술인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또는 예술활동 증빙이 가능한 예술인

- 및 단체의 비 상업적 용도의 문화예술 활동의 경우 이용료의 50% 감면
- 2. 서울시 업무협약기관 및 유관기관의 경우 이용료의 30% 감면
- 3. 8일 이상을 연속하여 이용하는 경우 장기 이용으로 구분하며, 장기 이용자의 경우 장기 이용이 시작되는 날부터 이용료의 30%를 감면한다. 단, XR촬영 준비를 위한 기술 리허설 기간은 감면 대상 이용 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4. [별표9]콘텐츠활용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이용료의 20% 감면
- ③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이용신청서 제출시 [별표2] 이용료 감면신청서 및 감면신청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운영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이용절차 및 이용료의 납부)

- ① 이용신청은 신청 시기에 따라 정기와 수시로 구분한다.
- ② 정기 이용은 “운영자”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에 신청 및 승인, 계약체결 등의 절차를 통해 시행하며, 수시 이용은 정기 이용기간에 잔여일정이 발생하는 경우 수시로 시행한다.
- ③ 스튜디오의 정기 이용시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운영자”는 정기 이용에 대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한다.
 - 2. “이용자”는 “운영자”의 정기 이용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표1]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e-mail)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 3. “운영자”는 이용 승인에 대하여 내부 심사를 거쳐 정기 이용 기간 시작일의 7일 전까지 이용 승인 여부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 4. 이용자는 스튜디오 이용 승인 통지를 받은 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별표10] “이용계약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운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5. 이용료의 납부 및 절차는 본조 제5항을 따른다.
- ④ 스튜디오의 수시 이용시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이용자는 이용예정일 15일 전까지 [별표1]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e-mail)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단, XR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접수하여야 한다.
 - 2. “운영자”는 이용 승인에 대하여 내부 심사를 거쳐 이용자가 신청을 접수한 일의 최소 5일(영업일 기준) 이내로 이용 승인 여부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 3. 이용자는 스튜디오 이용 승인 통지를 받은 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별표10] “이용계약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운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4. 이용료의 납부 및 절차는 본조 제5항을 따른다.
- ⑤ 스튜디오 이용료의 납부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이용자는 이용예정일의 5일 이전까지 스튜디오가 지정하는 계좌에 스튜디오 이용기간 동안의 이용료 전액을 일시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운영자”와의 협의를 통해 이용료를 분할 납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자”의 요청에 따라 “운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본조 본항 제1호에 따라 이용료를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 이용료의 최소 50% 이상을 이용예정일의 5일 이전까지 납부 및 잔금 납부에 대한 보증보험 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용자는 이용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잔금 납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운영자”의 승인을 받아 이용신청서 및 이용계약서의 이용기간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 초과된 기간에 대한 이용료를 이용 종료일 이후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4. 본 조 본 항 제3호의 초과 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운영자”는 연 7퍼센트의 연체료율로 연체료를 징수하며, 이용자는 초과 이용료 및 납부 완료까지의 연체료를 60일 이내로 납부하여야 한다. 60일을 초과하여 납부가 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다.
- ⑥ 이용자는 촬영 시간 외에도 스튜디오 이용에 따라 소요되는 준비 및 철수에 대한 최소한의 일정을 확보해야 하며 이용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운영자”는 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 ⑦ 이용자가 이용계약서 송부 및 이용료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이용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 ⑧ 이용자는 일정 및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최초 신청한 이용예정일로부터 최소 7일 이전까지 “운영자”에게 알려야 하며, “운영자”는 일정 및 변경 내용에 따라 이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이용 변경을 수용할 경우 “운영자”는 이용자와 변경 일정에 대한 이용계약서를 새로이 체결하기로 한다.
- ⑨ “운영자”는 전 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자”의 결정에 따라 전 항의 기간을 조정하여 이용자와 협의할 수 있다.
- ⑩ “운영자”의 이용 승인 전까지 복수의 신청으로 인해 이용 신청 기간의 중복 및 경합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운영자”는 순위가 동일한 경우 XR시스템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우선으로 선정한다.
 1. 서울특별시 남산XR스튜디오 문화예술인 공모사업
 2. 서울특별시를 소재지로 하는 예술인 및 단체
 3. 서울특별시 산하 예술 단체 및 문화예술관련 비영리기관
 4.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과 지원사업
 5. 서울특별시 업무협약기관 및 유관기관
 6. 기타 기업 또는 단체, 개인

제10조(이용취소 및 위약금)

- ① 이용자는 이용을 취소할 경우 이용 시작 예정일로부터 공휴일을 포함하지 않은 3일 이전 (이하 “취소기간”이라 함) 19시 전까지 “운영자”에게 [별표8]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및 “운영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별도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운영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 취소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 “운영자”는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② 이용자가 취소기간 내에 취소신청을 할 경우, “운영자”는 이용자가 지불한 이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 ③ 이용자가 취소기간 이후에 취소신청을 할 경우, “운영자”는 이용자가 지불한 이용료의 20%에 해당하는 위약금이 발생하며, “운영자”는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이용료만 반환한다. 단, 당일 이용취소를 할 경우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④ 이용자가 이용일에 해당하는 기간 중의 일부를 취소할 경우, 스튜디오는 이용자가 지불한 이용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위약금을 제하여 반환한다.
 - 1. 이용자가 취소기간 내에 이용기간 중의 일부를 취소할 경우, 취소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을 이용자에게 반환한다.
 - 2. 이용자가 취소기간 이후 이용기간 중의 일부를 취소할 경우, 취소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제하여 이용자에게 반환한다.
- ⑤ 이용자가 장기 이용으로 이용료를 감면 받은 이후 이용 기간의 일부를 취소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따른다.
 - 1. 이용자의 취소 일수가 반영된 실제 이용 기간이 제8조 2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정상 이용료로 재조정하여 이용료를 부과한다.
 - 2.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가 1호에 따라 조정된 이용료를 초과하여 스튜디오가 이를 이용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경우, 제10조 제1항부터 제10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⑥ 이용료의 반환은 제10조 제1항의 취소 신청서에 따라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로 취소 승인 완료 이후 30일 이내 반환하도록 한다.
-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용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 스튜디오와 이용자는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상호 면책되며, 이용자가 이용료를 납부한 경우 스튜디오는 이용자에게 이용료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1. “운영자” 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사태로 스튜디오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2.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라 제1급 감염병의 발생으로 행정명령의 발동이나 스튜디오 이용에 따른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스튜디오가 불가항력적 사유로 차질과 이상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운영 및 이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1조(이용 제한)

- ① “운영자”는 이용자의 이용 신청 및 이용에 대하여 천재지변·화재·붕괴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나 그러한 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스튜디오 장비 및 시설물 점검 등의 스튜디오의 내부 사정에 따라 이용 신청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② 이용자의 스튜디오 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 신청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 스튜디오 이용약관을 위반하는 경우
 - 2. 법령 또는 사회규범에 위반되는 내용이나 스튜디오의 품위를 해할 우려가 있는 콘텐츠의 제작
 - 3. 이용신청서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였거나 제3자에게 이용을 임의 양도한 경우

4. 이용신청서에 작성한 내용에 허위가 있거나, 사전 승인 또는 협의되지 않은 시설의 이용이나 임의적인 변경이 발견되는 경우
- ③ 이용자의 이용이 제11조 제2항에 해당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해당 이용자는 “운영자”의 별도의 조치 및 협의를 이루어지기 전까지 스튜디오 이용을 영구히 금지한다.
- ④ “운영자”는 이용자가 장비 기능 숙지 및 운용 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운용 능력에 대한 증빙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빙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을 제한시킬 수 있다.

제12조(이용자의 의무 및 책임)

- ① 이용자는 본 이용약관과 신청서 기타 “운영자”가 제공한 서류에 명시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이용자는 스튜디오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기 전 사전점검을 통하여 이상유무를 성실히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이용자가 그 책임을 갖는다.
- ③ 이용자는 스튜디오의 장비 외의 외부 장비 및 물품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4]물품 반입 신청서를 제출하여 스튜디오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스튜디오의 장비 및 물품과의 혼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이용자가 그 책임을 갖는다. 또한 이용 완료 후 스튜디오 장비 및 물품과 바뀌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④ 이용자는 시설의 안전한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이용기간 동안 안전보건담당자를 선임하고 [별표7] 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 · 위생 · 보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⑤ 이용자는 시설 이용 이후 청소 및 시설을 원상 복구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용자가 원상 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영자”는 청소 및 원상복구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이를 지불해야 한다.

제13조(이용자의 정보 보호 및 이용)

- ① “운영자”는 이용자의 스튜디오 이용에 대한 계약의 성립 및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이용자의 정보를 관계법령 및 이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에 따라 수집할 수 있다.
- ② “운영자”는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에서 이용자에게 대한 정보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행할 수 있다.

제14조(손해배상책임)

-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동안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시설 및 장비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30일 이내로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 ② “운영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하자발생 및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 지지 아니한다.
- ③ 이용자가 촬영 및 제작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거나 제3자로부터 손해를 입은 경우 “운영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이 없으며, 이용자가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해 “운영자”

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운영자”를 면책시키고 이에 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④ 이용자가 발생시킨 손해로 인해 추후 이용이 예약되어 있던 다른 이용자에게 촬영 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를 발생시킨 이용자는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⑤ 이용자는 오염 가능성이 있는 연출 도구, 차량 진입 촬영 등 스튜디오의 오염 및 파손 위험도가 있는 물품을 별도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 이를 “운영자”에게 사전 고지 후 승인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제15조(분쟁해결)

- ① 스튜디오 이용에 따라 “운영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거나 약관에 대한 이견 등이 있는 경우 상관습에 따르거나 상호협의를 하여 해결하며, “운영자”와 이용자는 원만한 합의와 해결을 위해 성실히 임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소송이 발생하거나 법리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적 합의관할로 지정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16조(약관 외 사항 및 기타사항)

- ① “운영자”는 운영 일정, 시설 및 장비 점검, 증설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스튜디오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단, 이용자의 이용기간 또는 신청이 확정된 기간에 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자”는 이용자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운영자”는 이용자에게 해당 조정으로 인해 지체된 이용시간에 대한 연장이용을 승인하거나 해당 시간에 대한 이용료를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② 이용자는 스튜디오 이용에 따른 주차 차량을 “운영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주차장에서의 사고에 대하여 “운영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계약상 발생하는 채권의 채권자)

- ① “운영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남산XR스튜디오 운영 및 관리에 대해 위임을 받은 정당한 권리자다.
- ② “운영자”와 이용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배상 채권 등의 채권자는 “운영자”이며, 이용자는 이에 동의한다.
- ③ “운영자”는 본 조 제1항에 따라 이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의 채권자가 되는 것에 동의 한다.

제18조(효력)

- ① 본 약관은 “운영자”와 이용자 사이의 계약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 ② 본 약관은 2024년 3 월 11 일부터 적용된다.

[별표서식]

별표1. 이용신청서

별표2. 이용료감면신청서

별표3. 배경이용신청서

별표4. 물품반입신청서

별표5.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_개인용

별표6.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_법인용

별표7. 안전관리자선임계

별표8. 취소(반환)신청서

별표9. 콘텐츠활용동의서

별표10. 남산XR스튜디오 이용 계약서